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신규·소규모사업자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민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예정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인력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
유(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인력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부분 중 “둘 것”을 “보유(기
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시설란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실습실을 둘 것

제2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출 것”을 “확보(법인의 대표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술인력란에 따른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골재의 종류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국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확보할 것”을 “확보[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나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5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나 이상”을 각각 “하나 이상을 갖추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을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으로 서 해당 교육훈련의 강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중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교육훈련의 운영

·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이 표 제2호의 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유인력에 포함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대표자 한 명당 이 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6조(「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력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업종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할 것”을 “확보(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8조(「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1명 이상) 보유(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목에 따른 강의실 또는 나목에 따른 실습실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둘 것”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및 실험실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둘 것”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할 것”으로 한다.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할 것”을 “구성(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10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출 것”을 “확보(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확보기준란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갖출 것”을 “확보[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부터 3)까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확보기준란 중 “확보”를 “확보[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1) 또는 2)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둘 것”을 “보유(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11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2항제2호 본문 중 “갖출 것”을 “확보(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갖춰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제12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할 것”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13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에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같은 호 나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표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제4호 중 “확보할 것”을 “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담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할 수 있는 업무는 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담직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1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으로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담 관리자로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기준란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기준란의 기술인력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17조(「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법 제37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3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2제2항”을 “법 제37

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4제2항”으로, “3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3명 이상(전담 인력 1명 이상)의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 산림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강의실 하나 이상
별표 1 제4호나목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중 “200㎡ 이상”을 “100㎡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 중 “상근 관리자를 2명 이상”을 “관리자를 2명 이상(상근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4호가목에 따른 관리자로서 산림교육센터를 관리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표 제4호가목 또는 나

목에 따른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전임강사 또는 전문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자로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전담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2호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임강사, 전문강사,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20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요건란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제22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인력란의 “갖출 것”을 “확보(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는 기능직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24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25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자격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제27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한”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1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1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1호가목1)·2)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인력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마다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 대행업무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검사 대행업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0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임강사(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별표 2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강의실, 사무실 및 휴게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 중 “전문인력”을 “전문인력(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6항”을 “법 제20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3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8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추는 것

제3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전문인력”을 “전문인력(법인의 대표자가 별표 2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등록기준
란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등록기준란의 전문인력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
하여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36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7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전담인력으로서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8조(「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습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이 1명 이상일 것”을 “사람을 1명 이상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39조(「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를 “보유(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전담하여 지원·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단체·사업체·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40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0제2항제2호 중 “갖출 것”을 “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보할 것”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제41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확보할 것”을 “확보(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추는 것

제42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 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 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나목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 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나목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 1)란부터 4)란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란의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목에 따라 기관의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5의2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기관의 대표자가 제2호가목3)의 책임자·담당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나목3)의 책임자·담당자의 자격기준란 또는 같은 호 다목3)의 책임자·담당자의 자격기준란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
 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4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
 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의
 자격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5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
 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
 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
 력란의 자격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
 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7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
 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

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의 자격 요건 중 2종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이 표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같은 호 나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이 표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한 명당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46조(「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인력란의 각 목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거나 위 표 제4호 기술인력란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7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같은 호 다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이 표 제3호가목 또는 다목의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8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4호에 따라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4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인력란의 각 목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49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 이내 신규 사업자인 경우 1명 이상)을 확보(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이 경우 해당 인력은 해운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50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보유할 것”을 “보유(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연구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가. ~ 바. (생략) 2. 3. (생략)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u>확보(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u> 가. ~ 바.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1명 이상) 보유(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8(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14조의8(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 확보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 ----- 확보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추는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는 것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1명 이상의 전임교수요원과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u>확보</u> 할 것. <후단 신설>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담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할 것. 이 경우 <u>대표자 한 명당 할 수 있는 업무는 전임교수요원 또는 전담직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로 한정한다.</u>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u>보유할 것</u>	4. ----- ----- <u>보유(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u> <u>할 것</u>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u>법 제37조의2제1항</u> 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u>법 제37조의3제1항</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37조의2제1항</u> 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② ----- ----- ----- <u>법 제37조의3제1항</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청장은 <u>법 제37조의2제1항</u> 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 <u>법 제37조의3제1항</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

법 등) ① <u>법 제37조의2제2항</u>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u>법 제37조의3제1항</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u>법 제37조의3제2항</u>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u>3명 이상의 전담 인력</u>과 조직을 갖추는 것 3. <u>법 제37조의3제2항</u>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② ~ ⑦ (생략)	법 등) ① <u>법 제37조의3제2항</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① ----- <u>법 제37조의4제1항</u>-----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37조의4제2항</u>----- ----- <u>3명 이상</u> (<u>전담 인력 1명 이상</u>)의 인력----- 3. <u>법 제37조의4제2항</u>-----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u>보유할 것</u>	1. ----- ----- <u>보유(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u> <u>할 것</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물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제7조(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1. 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수산물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u>확보</u> 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 다. (생략) ② (생략)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확보</u>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u>전문인력</u> 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 1. ----- ----- ----- ---- <u>전문인력(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u> -----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u>법 제20조의2제6항</u> 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u>보유할 것</u> 가.·나. (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 ----- <u>법 제20조의2제7항</u> ----- ----- ----- -----. 1. ----- ----- <u>보유</u> <u>(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u> <u>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u> <u>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u> <u>포함한다)할 것</u>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추</u>	4. <u>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추</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①·② (생략)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u>전문인력</u> 이 2 명 이상 상근할 것 2. (생략)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전문인력(법인 의 대표자가 별표 2에 따른 자 격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표 자를 포함한다)</u> ----- 2. (현행과 같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u>보유할 것</u>	2. ----- ----- ----- <u>보유(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전담인력으로서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u>보유할 것</u> 가. ~ 라. (생략) 2. ~ 5. (생략) ② ~ ⑧ (생략)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 ----- ----- -----. 1. ----- ----- ----- <u>보유</u>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전담하여 지원·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당하는 전문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을 4명 이상 <u>보유</u>할 것 가. ~ 라. (생략) 3. 4. (생략) ② ~ ⑥ (생략)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u>보유</u>할 것 가. ~ 다. (생략) 2. (생략) ② ~ ⑦ (생략)	----- ----- <u>보유</u> (기관·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 라.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 ----- ----- ----- -----. 1. ----- ----- <u>보유</u> (기관·단체·사업체·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4명 이상의 상시 근무 전문인력을 <u>갖출 것</u>	2. ----- ----- ----- <u>확보(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생략)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대학·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 ----- ----- ----- ----- ----- 확보(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추는 것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추는 것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① (생략)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 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 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창 업일부터 3년 이내 신규 사업 자인 경우 1명 이상)을 확보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이 경우 해당 인력은 해운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

3. (생 략) ③ (생 략)	<u>로 근무할 수 있다.</u>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u>보유할 것</u> 3. (생략)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보유(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u>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4464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1365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5544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6399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516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4 - 7360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31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048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연 락 처	(043) 219 - 295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7446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32) 835 - 2423